

## 프레이저의 정의론을 통해서 본 약탈 문화재 반환의 문제(Ⅱ)

— 정의의 당사자, 방법을 경유한 대안 논리의 모색 —

정 재 요\*

•요 약•

이 논문은 문화국제주의와 문화민족주의라는 약탈 문화재 반환에 관한 기존의 담론이 아닌 ‘개념틀 다시 짜기’(reframing)를 통해 약탈 문화재 반환에 관한 지구화 시대의 대안적 논리를 모색해보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미국의 정치철학자 낸시 프레이저(Nancy Fraser)가 제안한 정의의 정치적 차원, 즉 정의의 당사자와 방법에 관한 이론을 연구의 분석틀로 설정한다. 본문에서는 프레이저가 정의의 당사자 규정으로 제안한 ‘중속된 모든 사람들의 원칙’을 세계시민주의의 층위에서 사유하고, 중속된 당사자들을 동등하게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제안한 ‘민주적 공론장’을 문화민주주의와 결부시키는 수준에서 약탈 문화재 반환에 관한 대안 논리를 모색해 본다. 연구결과 프레이저의 정의론을 통해서 본 약탈 문화재 반환의 문제는 이론적 적용차원에서의 일정한 한계가 존재했으나, 문화국제주의와 문화민족주의라는 기존의 담론 자체가 문화재에 대한 동등한 참여를 방해하는 지구적 정의 실현의 장애물일 수 있다는 인식을 제공해주거나, 세계시민주의와 문화민주주의의 틀에서 모색되는 또 하나의 지구적 정의 실현을 위한 유용한 지침을 제공해주기도 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프레이저의 정의론이 문화적 인간을 의미하는 호모 쿨투랄리스(Homo Culturalis)의 시선에서 약탈 문화재 반환 이슈를 사유하는데 유용성을 주는 이론, 다시 말하면 문화적 인간이 펼쳐내는 세계시민 민주주의를 기획하는데 유용한 정치철학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주제어 : 약탈 문화재, 낸시 프레이저, 정의의 당사자, 정의 실현의 방법, 세계시민주의, 문화민주주의

\* 진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조교수, E-mail: jyo@cue.ac.kr

## I. 머리말

지난 연구에서 약탈 문화재 반환에 대한 입장으로 널리 알려진 문화국제주의(Cultural Internationalism)와 문화민족주의(Cultural Nationalism)의 논리는, 미국의 정치철학자 낸시 프레이저(Nancy Fraser)가 제시한 3차원적 정의론을 적용했을 때 ‘잘못 설정된 틀’(misframing)로서 고찰 가능하다는 것을 검토해보았다.<sup>1)</sup> 이에 대한 후속연구로 기획된 본 논문은, 문화국제주의와 문화민족주의라는 기존의 담론이 아닌 ‘개념틀 다시 짜기’(reframing)를 통해 약탈 문화재 반환에 관한 지구화 시대의 대안적 논리를 모색해보는 것에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대한 논리의 모색을 위해 본고에서는 특히 프레이저가 제시한 ‘정의의 정치적 차원’에 주목해보고자 한다.<sup>2)</sup>

프레이저에 따르면 정의의 정치적 차원은 사회적 귀속의 기준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누구를 구성원으로 볼 것인지 결정하는 ‘경계 설정 측면’에서의 대표적 기능, 즉 정당한 분배와 상호인정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범위 안에 누가 포함되고 누가 배제되는 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본다. 또한 정의의 정치적 차원은 ‘의사 결정 측면’에서의 대표적 기능을 통해 경제적 차원과 문화적 차원 모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를 설정하며, 재분배와 인정에 관한 요구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가 누구인지와 함께 그러한 주장들이 제기되고 판결되는 절차와 방식까지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본다.<sup>3)</sup> 물론 이 모든 내용은 프레이저가 ‘동등한 참여’(parity of participation)라고 명명한바 있는, 정의 실현의 규범적 원칙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치적 대표 전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sup>4)</sup>

1) 정재요, “프레이저의 정의론을 통해서 본 약탈 문화재 반환의 문제(Ⅰ): 3차원적 정의론의 검토와 적용”, 『대한정치학회보』, 제30집 4호, 대한정치학회, 2022.

2) ‘경제적 (재)분배-문화적 인정-정치적 대표’로 제시되는 프레이저의 3차원적 정의론에서 ‘정의의 정치적 차원’은 정치적 대표(representation)에 관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정의에 관한 투쟁은 재분배와 인정뿐만 아니라 ‘대표’ 혹은 ‘포함’의 정치와 결합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떠올린다면, 정의의 정치적 차원(정치적 대표성 확보 전략)이야말로 동등한 참여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프레이저 역시 “정의에 대한 모든 요구는 명시적으로건 묵시적으로건 특정한 대표의 개념을 가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대표는 재분배와 인정에 대한 모든 요구에 항상 이미 내재되어 있다. 정치적 차원은 정의의 개념에 관한 문법 자체에 함축되어 있고 그것에 의해 강력히 요구된다. 따라서 대표 없이는 그 어떤 재분배나 인정도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낸시 프레이저 지음, 김원식 옮김, 『지구화 시대의 정의』, 서울: 그린비, 2010, p.45; 박진, “낸시 프레이저: 재분배, 인정, 그리고 대표의 3차원 정의와 페미니즘 운동”, 『여/성이론』, 24호,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11, pp.95-96; 백미연, “글로벌 시대 정의의 범위: 프레이저(Nancy Fraser)의 ‘대표’(representation) 개념을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제19집 2호, 21세기정치학회, 2009, p.67.

3) 낸시 프레이저 지음, 앞의 책, pp.38-39; 황정미·염건웅, “차별금지법안 찬반 논쟁에 관한 연구: 낸시 프레이저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동아법학』, 제94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p.408.

이처럼 프레이저가 제시한 정의의 정치적 차원은 정의 실현을 위한 ‘구성원 설정’(경계 설정)과 ‘절차 설정’(의사 결정)의 틀에서 설명되어지고 있는데,<sup>5)</sup> 프레이저는 이것을 ‘정의의 당사자’와 ‘정의 실현의 방법’의 수준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프레이저가 제시한 정의의 당사자론과 정의 실현의 방법론을 연구의 분석틀로 삼아 약탈 문화재 반환에 관한 지구화 시대의 대안적 논리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 구상에 따라, 아래의 II장에서는 연구 분석틀에 관한 고찰로서 프레이저가 제시한 정의의 당사자·방법에 관한 사항을 개략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이는 약탈 문화재 반환에 관한 대안 논리를 모색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마련해보는 작업이기도 하다. 본고의 III장에서는 프레이저의 정의론을 경유하여 약탈 문화재 반환에 관한 대안 논리를 모색해본다. 여기서는 프레이저가 정의의 당사자 규정 원칙으로 제안한 ‘중속된 모든 사람들의 원칙’을 세계시민주의의 층위에서 사유하고, 중속된 당사자들을 동등하게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제시된 ‘민주적 공론장’을 문화민주주의와 결부시키는 수준에서 약탈 문화재 반환에 관한 대안 논리를 모색해볼 것이다. 결론 부분인 IV장에서는 약탈 문화재 반환 이슈와 관련하여 프레이저가 주창한 ‘지구화 시대의 정의’가 가져다줄 수 있는 오늘의 시사점 및 이론적 한계를 언급하면서 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

## II. 이론적 고찰

### 1. 정의의 당사자

프레이저가 정의의 당사자를 모색하게 된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지구화 시대를 맞이하게 된 오늘날 기존의 국민국가 시스템을 전제로 한 ‘베스트팔렌적 틀’<sup>6)</sup>을 통해서 국경을 초월하는 부정의를 폭로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인식 때문이다. 즉, 정의를 특정 영토

4) Fraser, Nancy, “Recognition without Ethics”, *Theory, Culture & Society*, vol. 18, no. 2-3, 2001, pp.24-25; 이문수, “정의에 대한 새로운 인식: Honneth와 Fraser의 인정이론을 통해 본 현대 사회에서의 정의”,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9권 제3호, 한국거버넌스학회, 2012, p.34.

5) 낸시 프레이저 외 지음, 문현아·박건·이현재 옮김, 『불평등과 모욕을 넘어』, 서울: 그린비, 2016, p.431.

6) 주지하다시피, 베스트팔렌 조약은 1648년 독일을 무대로 신교와 구교 간에 벌어진 30년 전쟁을 종식시킨 조약(Peace of Westfalen)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현대 국가체계의 주요 특징이 자리잡게 된다. 여기서 프레이저의 관심사는 베스트팔렌 조약이 실제로 거둔 성과나 이 체계가 시작된 이후 전개되었던 수세기의 장구한 역사적 발전 과정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베스트팔렌 조약을 하나의 정치적 상상, 즉 상호 인정하는 주권적 영토 국가들이라는 하나의 세계 체제로서 불러들이고 있다. 낸시 프레이저 외 지음, 앞의 책, p.424.

내의 문제로만 한정시키면서 정의의 당사자를 제한된 정치공동체의 시민들에게만 국한시키는 구조야말로 국경을 초월한 부정의를 은폐시키는 요인으로 간주했던 것이다.<sup>7)</sup> 이에 프레이저는 정의의 ‘당사자’를 규정하는 것이야말로 지구화 시대의 정의론이 제시해야 할 핵심적인 과제라고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정의의 당사자를 규정하기 위한 몇 가지 원칙들을 언급한다. 관련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성원 원칙’(membership principle)이다. 동 원칙의 옹호자들은 정치적 소속(political belonging)이라는 기준에 호소하여 정의의 당사자 문제와 관련된 논란을 해결하려고 한다. 이 입장에 따르면, 일단의 개인들로 이루어진 집단을 정의와 관련된 동료 주체로 전환시키는 것은 공유된 시민권(shared citizenship) 혹은 공유된 국민성(shared nationality)이라고 본다. 즉, 영토국가의 시민들만이 정의의 주체이자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sup>8)</sup> 그렇기 때문에 구성원 원칙은 국민국가에 기반을 둔 제도적 현실에 충실하면서, 집단적 정체성에 기초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은 특권층과 권력계급의 배타적 민족주의의 강화에 기여하기 쉽다는 점에서 단점이 되기도 한다. 프레이저 또한 구성원 원칙을 통해서 기존의 베스트팔렌적 틀을 넘어서는, 이미 확립된 틀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있다고 한다.<sup>9)</sup>

둘째, ‘휴머니즘 원칙’(principle of humanism)이다. 동 원칙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인간성(personhood)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정의의 당사자에 관한 논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접근법은 보편적인 인간성에 기초하여 정의의 당사자에 관한 틀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배타적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접근을 가능케 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머니즘 원칙은 글로벌 차원의 인간성(global humanity)이라는 고도의 추상성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구화 시대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다양한 정의의 틀과 범위를 요구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sup>10)</sup> 추상적 지구주의에 바탕을 둔 정의의 당사자 논리는 자칫 내용 없는 일반 원칙으로의 도피만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프레이저 또한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포함시키려고 하는 휴머니즘 원칙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7) 낸시 프레이저 지음, 앞의 책, pp.100-101; 김원식, “비판이론과 정의(正義): 다차원적 정의의 모색”, 『법철학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법철학회, 2011, p.12.

8) 김원식, “지구화 시대의 정의(正義): 낸시 프레이저의 정의론 검토”, 『법철학연구』, 제28집, 중앙대학교 철학연구소, 2010, pp.126-127.

9) 낸시 프레이저 지음, 앞의 책, pp.114-115; 백미연, 앞의 논문, 2009, pp.60-61.

10) 위의 책, pp.115-116; 위의 논문, p.61; 김원식, 앞의 논문, 2010, p.127.

셋째,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원칙’(all-affected principle)이다. 구성원들만의 배타적 민족주의와 휴머니즘에 입각한 추상적 글로벌리즘 모두를 거부하면서 초국적 정의를 개념화하고자 하는 동 원칙의 옹호자들은, 상호 의존적인 사회관계라는 객관적 상호연관성을 제시하며 정의의 당사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원칙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사회 구조나 제도의 영향을 받는 인과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한 집단의 사람들이 서로 뒤얽혀 있다는 사실 자체에 있다. 즉, 공통의 구조적 혹은 제도적 틀에 함께 겹쳐 있다는 객관적 상호연관성이야말로 한 집단의 사람들을 정의에 관한 동료 주체로서의 위상을 부여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sup>11)</sup>

이러한 접근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구성원 개념에 대한 비판적 수단을 제공하고, 동시에 사회적 관계까지를 고려하게 만드는 분명한 장점이 있다. 또한 해당 사회의 구조나 제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정의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직관적인 차원에서도 충분한 설득력을 지닌 것처럼 보인다.<sup>12)</sup> 그럼에도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원칙은, 모든 사람은 모든 일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마련이라는 이른바 ‘나비효과’(butterfly effect)에 의해서 관련성의 범위를 명확히 확정할 수 없다는 단점 또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동 원칙이 정의의 주체 설정과 관련하여 보다 높은 적실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영향 미침’(affectedness)이라는 생각의 범위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좁혀져야 정의의 다양한 틀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다시 말하면 정의의 당사자로서 도덕적 위상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영향성의 수준과 종류를 구별하는 보다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sup>13)</sup>

넷째, ‘종속된 모든 사람들의 원칙’(all-subjected principle)이다. 이것은 구성원 원칙, 휴머니즘 원칙,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원칙이 가지는 각각의 결함들을 고려했을 때, 정의의 당사자 문제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원칙으로서 프레이저가 제안 및 채택하고 있는 입장이다. 동 원칙에 따르면, 특정한 협치구조에 종속된(subjected to structure of governance) 모든 사람은 그 구조와 관련된 정의문제에 대하여 주체로서의 도덕적 지

11) Young, Iris Marion, “Responsibility and Global Justice: A Social Connection Model”, *Social Philosophy and Policy*, vol. 23, no. 1, 2006, pp.102-130.

12) 백미연, 앞의 논문, 2009, p.61.

13) 이와 관련해서는 주어진 관습과 제도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에게 정의의 당사자로서의 도덕적인 위상을 부여하자는 입장, 혹은 기대수명과 삶의 기회에서 크게 영향을 받는 사람에게 도덕적 위상을 부여하자는 입장 등이 제안된 바 있지만, 어디까지나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 영향을 미치는 원칙은 합리적인 해석의 다양성에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Gould, Carol, *Globalizing Democracy and Human Righ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Held, David, *Global Covenant: The Social Democratic Alternative to the Washington Consensus*, Cambridge: Polity, 2004.

위를 가진다고 한다. 즉, 일단의 사람들이 정의의 당사자가 되는 근거를 공유된 민족성도, 전 지구적 규모의 추상화된 휴머니즘도, 인과적 상호의존도 아닌 특정한 협치구조에 대한 공통된 종속관계에서 찾는 입장인 것이다.<sup>14)</sup> 이것은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원칙’에서 살펴본 ‘영향 미침’(affectedness)이라는 관련성의 범위를 협치구조의 수준으로 한정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취약성의 조건(condition of vulnerability)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정의의 당사자로 범주화하는데 유용한 원칙이기도 하다.<sup>15)</sup>

물론 종속된 모든 사람들의 원칙은 ‘협치구조에 대한 종속’이라는 문구를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그 구체화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 프레이저는 동 문구를 다양한 유형의 권력에 대한 관계를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즉, 협치구조를 단순히 국가수준에서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구조를 결정하는 규범을 만들 수 있는 비국가기구들까지 포함시켜 폭넓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정의롭게 틀지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경우는, 관련된 상호작용을 규제하는 협치구조에 종속된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고려(equal consideration)를 했을 경우만을 의미하게 된다. 여기서 동등한 고려의 대상이 되기 위해 그 누구도 문제구조와 관련한 공인된 구성원이 될 필요가 없으며, 단지 그 구조에 종속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프레이저의 입장이다.<sup>16)</sup> 이렇게 글로벌 세계의 맥락에서 국가뿐만 아니라 정부 없는 거버넌스(governance without government)의 작용에도 주목하고 있는 종속된 모든 사람들의 원칙은, 다양한 형태의 협치구조에 종속되어 있는 오늘의 상황을 전제했을 때 분명 정의의 당사자를 판단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sup>17)</sup>

14) 낸시 프레이저 지음, 앞의 책, pp.117-119.

15) 백미연, 앞의 논문, 2009, p.62.

16) 따라서 지구적 경제의 협치구조에 의해서 부과된 규칙들이 낳는 결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지구적 경제로부터 절연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인들은, 비록 공식적으로 지구적 경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지구적 경제와 관련된 당사자로 간주된다. Ferguson, James, “Global Disconnect: Abjection and the Aftermath of Modernism”, *Expectations of Modernity: Myths and Meanings of Urban Life on the Zambian Copperbel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9, pp.234-254.

17) 물론 학계에서는 종속된 모든 사람들의 원칙에서 제안되고 있는 ‘협치구조에 대한 종속’ 또한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원칙에서 제안되는 ‘영향 미침’과 유사한 수준의 추상성과 포괄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동 접근법을 정의의 당사자 원칙으로 채택하더라도 이들 주체의 주장을 구속력 있는 정치적 결정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Young, Iris Marion, *Inclusion and Democrac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표 1〉 정의의 당사자 규정을 위한 원칙

| 구분            | 구성원 원칙                  | 휴머니즘 원칙                                |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원칙                             | 종속된 모든 사람들의 원칙                                   |
|---------------|-------------------------|--|--|--|
| 당사자 설정의 핵심 기준 | 정치적 소속, 공유된 시민권         | 보편적 인간성                                | 상호 의존적 사회 관계                               | 특정한 협치구조에의 종속                                    |
| 이론적 장점        | 국민국가에 기반을 둔 제도적 현실에 충실함 | 배타적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 가능함               | 구성원 개념에 대한 비판적 수단을 제공함, 사회관계까지 고려한 정의론의 제시 | 다양한 협치구조에 종속된 현실을 잘 반영함, 사회적 약자를 범주화 하는데 유용성을 가짐 |
| 이론적 단점        | 배타적 민족주의의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  | 고도의 추상성에 따라 보다 다양하고 구체화된 정의론을 제시하기 어려움 | 관련성의 범위를 명확히 확정할 수 없음 (나비효과)               | 협치구조에 대한 종속성 기준이 지니고 있는 추상성과 포괄성                 |

그런데 정의의 당사자를 규정하기 위한 원칙으로 ‘종속된 모든 사람들의 원칙’을 채택 하더라도, 이러한 구성원 설정은 과연 어떠한 절차와 과정(how of justice)을 거쳐야 하는지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것은 프레이저가 종속된 모든 사람들의 원칙을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에 관한 ‘정의 실현의 방법’을 논의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 2. 정의 실현의 방법

앞서 언급한 것처럼, 프레이저가 제시한 정의의 정치적 차원은 정의 실현을 위한 ‘구성원 설정’(경계 설정)과 함께 ‘절차 설정’(의사 결정)의 틀에서 설명된다. 프레이저는 절차 설정의 틀을 ‘정의 실현의 방법’이라는 수준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핵심은 종속된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참여시키는 (초국적)공론장을 구상하는 것과 관련된다. 이에 관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프레이저는 정의의 당사자 규정을 위한 원칙으로 ‘종속된 모든 사람들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정의의 당사자로 규정하기 위한 방법 또한 초국적 (혹은 지구적) 차원의 담론 장(場)을 구상하는 형식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즉, 기존의 베스트팔렌적 틀에서의 국민국가 단위의 사고만을 통용시키는 수준을 넘어, 전 지구적 요인에 의해

서 영향을 받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참여시키기 위한 보다 거시적인 공적 논쟁의 장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프레이저는 종속된 모든 사람들의 원칙을 실행할 방법적 모델로 ‘세계 사회 포럼’과 같은 담론 장을 예시로 들고 있는데,<sup>18)</sup> 이러한 초국적 공론장은 반드시 대화적인(dialogical) 측면과 제도적인(institutional) 측면 모두를 아울러야 한다는 것이 프레이저의 주장이다. 그렇게 했을 때에만 ‘동등한 참여’(parity of participation)라는 정의 실현의 규범적 원칙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sup>19)</sup> 이렇게 지구화 시대의 정의실현에 관한 방법으로 제안된 민주적 공론장은 민주적 정당성 확보에 관한 ‘대화적 측면’과 함께, 실질적 유효성 확보에 관한 ‘제도적 측면’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 프레이저의 일관된 입장이다.<sup>20)</sup>

프레이저의 정의론이 지구화 시대의 정의론이 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 국민국가 내에서 단순한 경제적 분배의 문제로만 정의를 사유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경제적 분배뿐만 아니라 문화적 인정과 정치적 대표까지 아우르면서 ‘동등한 참여’라는 정의 실현의 규범적 원칙을 구체화하기 위한 기획 속에는 당사자들의 대화와 참여를 강조하는 ‘민주적 정의론’(theory of democratic justice)의 전통이 두어져있는 것이다. 공적 논쟁은 대화와 담론을 매개로한 민주적인 과정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따라, 프레이저가 제안한 정의 실현의 방법 역시 권위주의/엘리트주의적 접근법을 거부하면서 ‘주체’에 대한 논쟁에 ‘종속된 모든 사람들의 원칙’을 적용하려는 대화적인 방법으로 기획된다.<sup>21)</sup> 그렇기 때문에 정의실현의 방법으로서의 공론은 오로지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이 그들의 공동의 관심사를 처리하는 것과 관련된 토의에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한에서만 정당한 것으로 간주된다. 여기서의 토론은 원칙적으로 결과와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만 하며(포용성 조건), 원칙상 모든 대화의 참여자들은

18) 프레이저가 지구화 시대의 정의실현에 관한 방법적 모델로 제시한 세계 사회 포럼은 몇 가지 연대성의 토대 위에서 성립된다고 한다. 이를테면, 종속적이고 문화적인 분파주의에 대한 분명한 거부와 문화적 다원성에 대한 명백한 수용, 공유된 정치적 의사소통의 상황과 실천, 강압적 지배에 대한 구성원들의 공포를 없애주는 느슨한 조직 모델,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투쟁을 신자유주의적으로 지구화하는 자본에 대한 투쟁과 연관시키고 공동의 적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포괄적인 해석지평 등이다. 낸시 프레이저 지음, 앞의 책, p.251. 필자는 이러한 연대성 모델에 입각한 초국적 공론장 이론은 ‘세계시민주의’와 ‘문화민주주의’의 틀에서 약탈 문화재 반환 논리를 모색하려는 본고의 집필 방향에도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고 본다.

19) 낸시 프레이저 지음, 앞의 책, pp.120-123.

20) 이 점에서, 정의 실현의 방법에 관한 프레이저의 이론은 민주적 정당성과 함께 정치적 유효성을 가져야 한다는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과도 일정한 상통성이 있다. 위르겐 하버마스 지음, 한승완 옮김, 『공론장의 구조변동』, 파주: 나남, 2001, pp.57-59.

21) 낸시 프레이저·악셀 호네트 지음, 김원식·문성훈 옮김, 『분배냐, 인정이냐?』, 고양: 사월의책, 2014, p.82; 백미연, 앞의 논문, 2009, p.65.

그들의 견해를 진술하고, 문제를 설정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진 암묵적이거나 명시적인 가정들을 문제 삼고, 필요한 경우에는 논의의 수준을 바꾸고, 일반적으로 그들의 의견이 공정하게 청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체로 평등한 기회를 누려야만 한다(동등성 조건).<sup>22)</sup>

한편, 프레이저는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대화적 측면과 함께, 실질적 유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측면에도 주목한다. 포용성과 동등성의 조건하에서 이루어지는 논쟁적 대화만이 정의의 내용과 당사자에 대한 합의를 모색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기는 하지만, 대화 그 자체만으로는 정의를 둘러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대화는 논의의 종결과 합의된 사항의 실행을 위해서, 당사자 문제에 관하여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 실천력 있는 제도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프레이저의 주장이다.<sup>23)</sup> 프레이저에 따르면 이 같은 ‘공론의 정치적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에서 형성된 의사소통 권력이 먼저 구속력 있는 법률로 번역되고 나아가 행정 권력으로도 번역될 수 있어야만 하며(번역 조건), 공적 권력은 그것에 응답해야만 하는 의지, 즉 토론을 통해서 형성된 의지를 실행할 수 있어야만 한다(능력 조건).<sup>24)</sup>

이처럼 프레이저가 구상하고 제안한 지구화 시대의 정의 실현의 방법은 대화적인 측면과 제도적인 측면을 결합시킨 공론장에서의 비판적-민주적(critical-democratic) 방식의 담론 절차로 설명될 수 있다.<sup>25)</sup> 그럼에도 프레이저의 정의론이 지닌 한계는, 기존의 베스트팔렌적 틀에서 주도된 국민국가 단위의 국제적 현실주의가 지구화 시대를 상징한 이상주의의 조건을 상당수준 약화시킨다는 점에 있다. 이를테면, 초국적 공론의 경우 영토 국가 단위의 공론과는 달리 포용성과 동등한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설령 대화적 방법으로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된 최상의 시민사회가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담론 장(場)이 정의의 틀을 새롭게 규정하자는 제안을 정당화할 정도로 충분히 대표성이 있거나 민주적일 수는 없다.<sup>26)</sup> 또한 정의의 당사자에 관한 틀

22) 낸시 프레이저 지음, 앞의 책, p.164.

23) 김원식, 앞의 논문, 2010, p.130.

24) 여기서 번역 조건은 시민사회로부터 제도화된 공적 권력으로 나아가는 의사소통 권력의 흐름과 관련되는 반면, 능력 조건은 그것의 공적인 의도를 실현할 수 있는 행정 권력의 능력과 관련된다. 낸시 프레이저 지음, 앞의 책, pp.168-169.

25) 황정미·염건웅, 앞의 논문, 2022, p.413.

26) 비슷한 맥락에서, 프레이저가 차용하고자 했던 ‘세계 사회 포럼’은 정의 실현의 방법에 관한 초국적 공론장이 아니라는 비판적 평가도 학계에 존재한다. Conway, Janet and Jakeet Singh, “Is the World Social Forum a Transnational Public Sphere?: Nancy Fraser, Critical Theory and the Containment of Radical Possibility”, *Theory, Culture & Society*, vol. 26, no. 5, 2009.

설정의 과정을 민주화하기 위한 노력은 초국적 공공 여론을 구속력과 강제력을 지닌 결정으로 전환시킬 공식적인 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지만, 초국적 차원의 민주적 공론장은 공동의 의지를 번역해낼 세계 수준의 입법부도, 그리고 이러한 결정을 실행할 수 있는 국제 수준의 행정부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sup>27)</sup>

이 같은 국제적 현실주의에 입각한 이론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프레이저의 정의론은 국민국가적 경계를 뛰어넘는 지구화 시대의 정의의 틀을 담대하게 구상하고 있다는 점, 인정과 재분배 사이의 간극을 정치적 대표와 동등한 참여라는 당위적 규범을 통하여 연결시키고자 했다는 점, ‘불평등 분배-무시-대표 불능’에 대한 객관적인 조건을 규명하려 했다는 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sup>28)</sup> 아래에서, 본 장에서 개략적으로 살펴본 정의의 ‘당사자’와 ‘방법’에 관한 프레이저의 이론을 경유하여 약탈 문화재 반환에 관한 대안 논리를 모색해보도록 하겠다.

### Ⅲ. 프레이저의 정의론을 경유한 약탈 문화재 반환 논리의 모색

#### 1. 종속된 모든 사람들의 원칙과 세계시민주의의 상상

프레이저가 채택한 ‘종속된 모든 사람들의 원칙’에 입각한다면, 약탈된 세계 문화유산의 정의로운 배치는 이것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인 세계시민들의 동등한 참여의 지평에서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약탈된 세계 문화유산은 문자 그대로 ‘세계’의 문화유산이므로 ‘세계시민’들이 그러한 문화재를 향유하지 못하거나 어렵게 만드는 사회적 배치야말로 문화적 인정의 조건에 동등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지구화 시대의 부정의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의의 당사자에 관한 프레이저의 이론은 약탈 문화재 반환에 대한 기존의 입장인 문화국제주의와 문화민족주의와는 달리 문화재 원산국과 시장국의 구성원들과 함께 세계 문화유산을 향유하려는 세계시민 모두의 동등한 참여를 기획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국 박물관·루브르 박물관·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등에 소재한 약탈 문화재의 지구적 배치에 동등하게 참여하지 못하고, 이러한 결정에 스스로 종속되어 있

27) 낸시 프레이저 지음, 앞의 책, pp.123-124; 김원식, 앞의 논문, 2010, pp.130-131.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프레이저가 제안한 정의 실현의 방법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한계(혹은 약점) 때문에 민주적 공론장을 통한 문화민주주의의 틀에서 약탈 문화재 반환 논리를 모색하는 것에서도 동일 층위의 논리에서 파생되는 유사한 한계점이 나타난다.

28) 같은 견해로는 박건, 앞의 논문, 2011, p.98.

다는 것을 인지할 줄 아는 세계시민성의 함양과 발현이다.

전술했듯이, 프레이저의 사유 체계에서 정의의 가장 일반적인 의미는 참여 동등(parity of participation)에 두어져 있다. 그래서 정의는 모든 사람이 동료로서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사회적 배치를 요구하며, 부정의를 극복한다는 것은 제도화된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다. 그런데 세계 유수의 박물관들이 문화재 약탈국(시장국)들에 주로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전 지구적으로 제도화된 장애물’로 사유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시민성을 인지한 지구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상정한다면 오늘날과 같은 약탈된 세계 문화유산의 지구적 배치에 다수의 세계시민들은 동등한 참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sup>29)</sup>

이 점에서, 프레이저가 제안한 정의의 당사자론을 경유하여 약탈 문화재 반환의 논리를 모색하는 데에는 세계시민주의에 입각한 문화적 인간의 상상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우리가 약탈 문화재의 종속된 당사자다”라는 인식론적인 바탕 위에서, 약탈된 세계 문화유산을 단순한 국가 단위의 소유물이 아니라 전 지구적 수준의 공유물로 인지할 줄 아는 세계시민성의 전제가 요청된다는 것이다.<sup>30)</sup>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세계 문화유산에 영향을 받는 세계시민주의의 차원에서 문화재를 바라보는 입장이 문화재 보호를 목적으로 한 최초의 국제협약인 ‘1954년 헤이그 협약’(The 1954 Hague Convention) 전문(前文)에 이미 나타나 있다는 것이다. 관련 내용을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어떤 민족에 속한 문화재인지 불문하고 문화유산에 대한 손상은 전 인류의 문화유산에 대한 손상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개개인 모두가 세계 문화유산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문화유산의 보존은 전 세계인에게 매우 큰 중요성을 지니며, 이러한 유산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가 절실하다.<sup>31)</sup> <Convention of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1954>

29) 부정의를 피하려면 문제가 되는 제도나 실천에 의해 중요하게 영향을 받는 비성원이나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위상이 부여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글로벌한 경계로부터 비자발적으로 연결이 끊기게 된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인들도 그 경제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이와 관계에서는 정의의 주체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본문의 각주16 에도 같은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낸시 프레이저 외 지음, 앞의 책, p.443. 이러한 프레이저의 언급은 문화재 향유를 하기 위해 세계 유수의 박물관으로 가지 못하는 세계시민 일체가 정의의 당사자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본고의 주장에 중대한 시사를 제공해준다.

30) 김정민, 『그들은 왜 문화재를 돌려주지 않는가』, 서울: 을유문화사, 2019, pp.341-344.

31) <https://en.unesco.org/protecting-heritage/convention-and-protocols/1954-convention> (검색일: 2023. 10.01)

Being convinced that damage to cultural property belonging to any people whatsoever means damage to the cultural heritage of all mankind, since each people makes its contribution to the culture of the world: Considering that the preservation of the cultural heritage is of great

위 내용은 세계시민으로서 우리 모두는 국적에 상관없이 세계 문화유산을 보호할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여 ‘국제 문화재 보호주의’를 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32)</sup> 이는 문화재의 보호·복원·반환 등과 같은 문제가 특정 국가만의 책임이 아닌 전 인류의 공동 책임이라는 인식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sup>33)</sup> 필자는 이러한 국제협약의 바탕에는 프레이저가 주창한 정의의 당사자론에 근거를 둔 지구화 시대의 정의가 침윤(浸潤)되어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종속된 모든 사람들의 원칙과 세계시민주의에 근거하여 약탈 문화재 반환 문제에 관한 실질적인 대안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언급될 수 있을까? 여기서는 영토국가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베스트팔렌적 틀을 넘어서는, 세계시민들의 동등한 참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의 모색이 중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재의 환수를 반드시 영토고권적인 문제로만 접근할 필요는 없다는 전제 하에서 ‘문화재의 현지 활용’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세계 문화유산의 향유를 원하는 세계시민주의의 관점에서는 약탈 문화재에 대한 현지에서의 적절한 활용 또한 넓은 의미의 ‘환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약탈 문화재의 사회적 배치에 종속된 정의의 당사자 측면에서는 이렇게 문화재 환수의 개념을 좀 더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이해하여 약탈 문화재가 현지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마련에 주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sup>34)</sup>

비슷한 맥락에서, 대여 형식을 통해 약탈 문화재의 원산국으로의 일시적인 반환을 한 후, 문화재의 원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원주민이나 문화재 향유를 원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형태로 약탈 문화재에 얽힌 서사와 지식을 공유하는 것도 기획될 수 있을 것이다.<sup>35)</sup> 이는 지역사회와 원주민의 문화재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전제로

---

importance for all peoples of the world and that it is important that this heritage should receive international protection;

32) 정규영, “이집트 문화재의 반환 가능성에 관한 연구”, 『지중해지역연구』, 제9권 제1호, 부산외국어대학교 지중해지역원, 2007, p.235; 류병운, “약탈 문화재에 관한 국제분쟁 연구: 한국 문화재 반환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제20권 제1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p.151.

33) 이보아, “문화재의 원산국으로의 반환에 대한 고찰”, 『비교문화연구』, 제5호,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1999, p.308.

34) 송호영, “해의 소재 불법 문화재의 환수를 위한 법정정책 연구”, 『문화재』, 제48권 4호, 국립문화재연구원, 2015, p.37.

35) 실제로 2015년 호주 국립 박물관에서는 영국 박물관으로부터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소장품 중에서 호주 원주민 관련 오브제(objet)를 빌려서 오브제의 원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원주민들의 목소리, 감정, 이야기를 들려주는 <조우(Encounters: Revealing Stories of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Objects from the British Museum, 2015.11.27.~2016.03.28)> 라는 전시를 기획한 바 있다. 여기에는 27개 원주민 공동체가 관여했으며, 그들은 전시된 오브제에 얽힌 이야기와 지식을 공유했다. 박윤옥, “박물관에서의 문화민주화에 대한 고찰: 문화민주주의로의 전이”, 『박물관학보』, 제40권, 한국박물관학회, 2021, pp. 47-48.

지식 생산과 문화재 통제에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연구를 통한 이익이 그 사회에 충분히 환원되는 것으로 설명되는 ‘윤리적 고고학’(ethical archaeology)의 내용에 수렴하는 대안으로 볼 수 있다.<sup>36)</sup> 그 밖에도, 약탈 문화재 또한 세계의 문화유산임을 고려하여 소유 관념을 넘어선 공유를 구체화시키는 차원에서 ‘문화재 순환전시’나 ‘문화재 디지털화 작업’에 참여하는 것 등도 약탈 문화재 반환에 관한 대안 논리로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재의 현지 활용, 윤리적 고고학을 반영한 약탈 문화재의 접근기획, 문화재의 상호 교류 및 순환전시, 문화재 디지털화 작업에의 참여 등은 세계 유수의 박물관들이 문화재 시장국들에 주로 배치되어 있는 상황을 전제했을 때, 특히 문화재 원산국 주민들을 포함한 취약성의 조건(condition of vulnerability)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약탈 문화재를 향유하고 이들의 문화재에 대한 동등한 참여를 유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종속된 모든 사람들의 원칙과 세계시민주의에 입각한 정의론의 모색에 있어서도 그것이 약탈 문화재 반환 이슈를 다룬다면 여전히 ‘상상’ 단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비국민인 이방인들도 동등한 참여를 해야 하는 것이 옳다는 세계시민주의적 ‘상상’이 오로지 국민만이 정의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베스트팔렌적인 ‘상식’을 과연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다시 말하면, 아직 제도화되지 않은 코스모폴리탄적인 가치가 이미 충분히 제도화되어 있는 국민적 가치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프레이저의 정의론을 통해서 본 약탈 문화재 반환의 테마에 엄존하고 있는 것이다.<sup>37)</sup> 나아가 세계시민주의적인 상상으로 모색된 대안 논리의 경우에도 자칫 문화적 동질감에 기인하는 문화재 원산국의 민족주의적·실존적 문제를 간과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존재한다. 약탈 문화재의 자국으로의 반환만이 원산국 주민들에 대한 문화적 인정으로 귀결될 수 있는 상황을 전제한다면, 종속된 모든 사람들의 원칙과 세계시민주의의 상상으로 모색된 일체의 대안적 논리는 원산국 주민들에 대한 또 하나의 문화적 무시 기제로 기능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프레이저가 제안한 정의론의 틀에서 약탈 문화재 반환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정의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정의 실현의 방법까지 고려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국민국가적인 당사자 정의가 여전히 공고한 조건에서 약탈 문화재 반환의

36) Nicholas, George and Hollowell, Julie, “Ethical Challenges to a Postcolonial Archaeology: The Legacy of Scientific Colonialism,” Hamilakis and Duke, eds., *Archaeology and Capitalism*, New York: Routledge, 2007, pp.59-70.

37) 최종렬, “낸시 프레이저의 정의론과 다문화주의: 동등한 참여 규범의 사용”, 『현상과 인식』, 39권 4호,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15, p.217.

논리가 설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화적 정당성’과 ‘실질적 유효성’ 모두를 충족시키는 정의 실현의 방법이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세계시민주의적 상상에서 초래되는 일련의 문제들을 문화민주주의의 구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론적 고찰이기도 하다. 다음 절에서는 프레이저가 제안한 정의 실현의 방법론을 경유한 약탈 문화재 반환 논리에 대해 모색해보도록 하겠다.

## 2. 민주적 공론장을 통한 문화민주주의의 구상

프레이저가 제안한 지구화 시대의 정의 실현의 방법이 대화적인 측면과 제도적인 측면을 결합시킨 (초국적)공론장에서의 비판적-민주적 방식의 담론 절차로 설명될 수 있다면, 이것을 경유한 약탈 문화재 반환의 대안 논리는 ‘민주적 공론장을 통한 문화민주주의의 구상’이라는 측면에서 모색될 수 있다. 문화가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는 것과 문화재 향유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전략에 주목하는 ‘문화의 민주화’(the democratization of culture)와는 달리, ‘문화민주주의’(cultural democracy)는 문화의 개방성과 접근성 외에도 문화와 관련된 범사회적 의사결정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민족적·사회적 동등성(social equality)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시민참여에 의한 정책결정과정의 비집권화를 지향함과 동시에 교육적 배경·인종·성·지역적 위치에 상관없이 문화예술에 참여하고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문화적 균등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문화민주주의는 프레이저가 언급한 정의 실현의 규범적 원칙인 ‘동등한 참여’(parity of participation)를 문화 영역에 접목시킨 담론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sup>38)</sup>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프레이저가 구상한 정의 실현의 방법은 종속된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참여시키는 (초국적)공론장에서의 비판적-민주적 방식의 담론 절차로 설명된다. 여기서 공론장은 반드시 민주적 정당성 확보에 관한 대화적인(dialogical) 측면과 실질적 유효성 확보에 관한 제도적인(institutional) 측면 모두를 아울러야 하며, 이에 관한 방법적 모델로 프레이저는 ‘세계 사회 포럼’과 같은 담론 장을 예시로 든 바 있다. 그렇다면, 민주적 공론장을 통한 문화민주주의의 구상 차원에서 지구화 시대의 정의를 위한 프레이저의 방법론에 약탈 문화재 반환 이슈를 적용했을 때, 가칭 ‘세계 약탈 문화재 사회 포럼’ 설립과 같은 초국적·민주적 공론장에 대해서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약탈 문화재 반환 문제를 다루는 거시수준의

38) 서순복,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의 정책적 함의”, 『한국지방자치연구』, 제8권 제3호, 대한지방자치학회, 2007, pp.28-33; 박윤옥, 앞의 논문, 2021, pp.37-41.

답론 장인 ‘세계 약탈 문화재 사회 포럼’도 프레이저가 언급한 ‘세계 사회 포럼’이 지니고 있는 몇 가지 연대성의 토대 위에서 성립된다는 점이다. 즉, 종속적이고 문화적인 분과주의에 대한 분명한 거부와 문화적 다원성에 대한 명백한 수용, 공유된 정치적 의사소통의 상황과 실천, 강압적 지배에 대한 구성원들의 공포를 없애주는 느슨한 조직 모델 등과 같은 연대성의 토대 위에서 ‘세계 약탈 문화재 사회 포럼’이 기능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초국적·민주적 공론장에는 약탈 문화재의 원산국 또는 시장국 주민들뿐만 아니라 약탈 문화재의 지구적 배치 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하기를 원하거나, 전 지구적 수준의 공유물로 세계 문화유산을 인지하는 모든 세계시민이 참여할 수 있다. 이는 종속된 모든 사람들의 원칙을 정의의 당사자로 상정하기 위한 대화적 공론장 모델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세계시민주의에 입각한 ‘세계 약탈 문화재 사회 포럼’의 설립과 운영은 이상주의에 입각한 모델이 되기 쉬울 것이다. “우리가 약탈 문화재의 종속된 당사자다”라는 인식론적인 바탕을 공유하는 세계시민 다수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유네스코의 (약탈)문화재 관련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하거나, 관련된 (외국)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연대성 전략으로 포럼의 실제 운영을 기획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세계 약탈 문화재 사회 포럼’을 경유한 각국의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비국가적 주체들과의 네트워크 및 연대구축 전략은 ‘종속된 모든 사람들의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한 초국적 공론장의 맹아적(萌芽的)인 형태로 충분히 모색될 수 있다고 본다.<sup>39)</sup>

전술했듯, 문화 영역에서의 동등한 참여라는 수준에서 문화민주주의를 떠올린다면 앞절에서 언급한 바 있는 문화재의 현지 활용, 윤리적 고고학을 반영한 약탈 문화재의 접근기획, 문화재의 상호 교류 및 순환전시, 문화재 디지털화 작업에의 참여 등은 메타적인 차원에서 그 자체가 ‘초국적·민주적 공론장’으로 사유될 수 있을 것이다.<sup>40)</sup> 이는 기존의

39) 송호영, 앞의 논문, 2015, p.40; 김민동, “이탈리아에서의 불법 문화재 반환소송”, 『법학연구』, 제22집 제3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p.127.

40) 이해를 돕기 위해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을 언급해보는 것이 유익할 것 같다. 널리 알려져 있는 것처럼, 하버마스는 생활세계의 개념을 상호이해의 과정으로 서술했고, 이러한 생활세계의 관점에서 ‘공론장’(the public sphere)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공론장은 정치적 생활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공개적이며, 공적 토론의 포럼을 제공하는 장소이다. 민주사회에서는 누구나 공론장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으며, 참여자 누구나 동등한 입장으로 공론장에서 담론을 제시할 수 있다. 즉, 공론장은 (세계)시민, 법적·경제적 주체, 가정과 커뮤니티 구성원 등을 포괄하는 공적 구성체로서의 행위자들이 집합·연합·표현 등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존재하는 곳이며, 이들 간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 전반에 걸친 협상과 논쟁이 보장되는 장소인 것이다. 조맹기, “하버마스(Juergen Habermas)의 공론장 형성과 그 변동: 공중의 생활세계를 중심으로”, 『한국소통학보』, 제8호, 한국소통학회, 2007, pp.77-80. 이러한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에 입각한다면, 약탈 문화재 반환의 대안 논리로 제시한 문화재의 현지 활용, 윤리적 고고학을 반영한 약탈 문화재의 접근기획, 문화재의 상호 교류 및 순환전시, 문화재 디지털화 작업에의 참여 등은 그 자체가 메타적인

문화국제주의(Cultural Internationalism)와 문화민족주의(Cultural Nationalism)에서 ‘구성원 원칙’을 정의의 당사자로 표방하는 것을 넘어, 약탈 문화재 반환에 대해 새로운 프레이밍을 제시해주는 매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정의의 주체 설정과 관련하여 프레이저가 제안한 ‘중속된 모든 사람들의 원칙’과 세계시민주의의 담론을 반영한 몇몇의 대안 논리가 그 자체로 초국적·민주적 공론장으로 사유될 수 있다면, ‘세계시민주의와 결부된 문화민주주의’라는 새로운 틀에서 약탈 문화재 반환의 문제를 고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편, 프레이저가 구상한 정의 실현의 방법인 (초국적)공론장에서의 비판적-민주적 방식의 담론 절차는 민주적 정당성 확보에 관한 대화적인(dialogical) 측면과 함께 실질적 유효성 확보에 관한 제도적인(institutional) 측면 모두를 아울러야 한다. 정의 실현의 방법에 관한 프레이저의 구상에 따르면, 가칭 ‘세계 약탈 문화재 사회 포럼’에서 펼쳐진 당사자들 간의 대화적 논의가 구속력을 갖춘 (국제)법으로 번역되고, 나아가 이러한 결정을 실행할 수 있는 국제 수준의 행정부까지 갖추어지는 모습이 이상적이다. 초국적 공론장에서의 담론이 구속력 있는 법률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해줄 수 있을 만큼의 동등한 참여와 당사자들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시민주의에 터 잡은 당사자들의 결정에 실질적인 효력을 부여해주기 위한 전제로 ‘세계 약탈 문화재 사회 포럼’의 정기적인 개최가 요구되며, 문화재의 현지 활용이나 문화재의 상호 교류 및 순환전시와 같은 세계시민주의의 담론을 반영한 대안논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각국의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비국가적 주체들과의 네트워크 및 연대구축을 통해 약탈 문화재 반환에 관한 민주적 정당성 확보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 모두는 프레이저가 언급한 정의 실현의 방법인 초국적·민주적 공론장을 통한 문화민주주의의 구상 수준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약탈 문화재 반환에 관한 대안 논리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기존의 베스트팔렌적인 틀에 따라 영토국가가 주권의 최상위 법적 주체인 상황에서, 사회 포럼 형식의 공론장을 통한 대화에 의존하는 방법으로는 약탈 문화재 반환에 관한 전 지구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국민국가 차원의 민주주의와 구성원 원칙에 입각한 시민권 질서가 엄존하는 현실 때문에 세계시민주의적 상상을 뒷받침하는 문화민주주의의 구상에서도 개별국가의 국익이라는 한계를 넘어서기가 어려운 것이다. 실제로 약탈 문화재를 소유한 나라들은 문화재 반환이라는 주제가 이슈화되면 항상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문화재를 고수하기 위해 다양한 논리와 정책을 개발해왔던 것이 사실이다.<sup>41)</sup> 이러한 국제적 현실주의 앞에서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된 최상

차원에서 ‘초국적·민주적 공론장’으로 사유될 수 있을 것이다.

의 시민사회를 구성하며, 이 곳에서 도출된 초국적 차원의 공론을 입법화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 수준의 기관을 구상한다는 것은 어쩌면 지나친 이상주의에 경도된 논의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상상과 구상의 수준에서 펼쳐졌던 이상주의의 기획이 공동체의 진보를 이끌고 사회 정의를 확장시켜왔던 인류사를 떠올린다면, 프레이저가 제안한 정의론의 틀에서 약탈 문화재 반환에 관한 지구화 시대의 논리를 모색해보는 것도 아주 의미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비록 세계시민주의의 상상, 문화민주주의의 구상이라는 이상주의적 기획에 입각한 것이기는 하지만, 오늘날 약탈 문화재 반환의 문제는 인류 보편의 담론으로서 ‘역사적 정의(正義)의 문제’라는 새로운 위상을 획득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sup>42)</sup> 정의를 확장시켜 왔던 인류사의 관성을 인지하고 실천한다는 차원에서 프레이저의 정의론은 (기존의 문화국제주의와 문화민족주의가 아닌) 세계시민주의와 문화민주주의로 구체화되는 또 하나의 정의 실현을 위한 유용한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

#### IV. 맺음말

1979년 유네스코의 인권·평화국장 및 법률자문위원을 역임했던 카렐 바사크(Karel Vasak)는 프랑스 혁명의 3대 이념인 자유·평등·박애를 기준으로 인권의 역사를 3세대로 구분하여 제시한 바 있다. 여기서 1세대 인권은 자유, 2세대 인권은 평등, 3세대 인권은 박애(연대)로 연결되는데,<sup>43)</sup> 이러한 인권의 내용에는 정치·경제적 권리(1세대 인권), 문화적 권리(2세대 인권), 인류 공동 유산에 대한 권리(3세대 인권) 등이 포함된다. 본고에

41) 이에 관한 하나의 예로 문화재 이동에 관한 국제협약의 문제점이 언급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협약으로는 전시문화재보호 협약(1954 헤이그 협약),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1970 유네스코 협약), 도난 및 불법 반출된 문화재의 국제적 반환에 관한 UNIDROIT 협약(1995 유니드로와 협약) 등이 있다. 문화재 환수에 관한 국제규범으로 볼 수 있는 이들 협약의 문제점은 협약 제정 이전에 일어난 사건(혹은 범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약탈)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국가가 정식으로 가입·비준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노문자, “과거사 극복을 위한 독일도서관의 도서반환 활동에 관한 연구: 유대인 장서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1권 제2호,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10, p.294; 구진영·최은봉, “국가 주권과 문화재 반환의 절차적 정당성: 메리만 관점의 비판적 접근”, 『담론201』, 제24권 1호, 한국사회역사학회, 2021, p.54; 정재요, 앞의 논문, 2022, p.182.

42) 정재요, 위의 논문, p.170.

43) 이주영, “발전권, 평화권, 환경권 개념의 발전과 ‘연대권’ 논의의 함의”, 『다문화사회연구』, 제10권 2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17, pp.33-36; 권혜령, “인권개념의 ‘세대’적 접근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학연구』, 제56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pp.90-91.

서 살펴보았던 프레이저의 정의론은 ‘정치적 대표-경제적 분배-문화적 인정’을 내용으로 한 지구화 시대의 정의를 고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찍이 카렐 바사크가 언급한 1·2·3 세대 인권 모두를 아우르는 인권과 정의의 정치철학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 다루었던 약탈 문화재의 원산국으로의 반환 문제는 ‘탈식민지화의 시대’(age of decolonization)라고 할 수 있는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된 사회·문화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sup>44)</sup> 필자는 이것을 세계시민의 인권, 그리고 문화 영역에서의 민주적 정의의 수준에서 모색될 수 있는 인권과 정의의 문제로 파악하였고, 동 주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 프레이저가 제시한 ‘지구화 시대의 정의론’을 연구의 분석틀로 채택하였다.

물론 본고에서 활용한 프레이저의 정의론은 인권과 정의를 아우르는 방대한 스케일의 정치철학을 정의의 내용·당사자·방법의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학계의 비판 또한 엄연히 존재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프레이저는 정치·경제·문화의 영역들 각각에 고유한 부정의들을 해명하는데 치중한 나머지, 정치와 경제 그리고 문화 사이의 교차와 중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삶의 물화의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sup>45)</sup> 사회적 종속의 조건에 놓여진 사회 집단들이 개별적으로 파편화되고 연대의 가능성이 점차 허물어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구화 시대의 정의론은 여전히 실천적 차원에서의 뚜렷한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등이 언급될 수 있을 것이다.<sup>46)</sup>

지구화 시대의 정의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약탈 문화재 반환의 문제에 프레이저의 이론을 적용한 국면에서도 동일 층위의 논리에서 파생되는 유사한 한계점으로 드러난 바 있다.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종속된 모든 사람들의 원칙과 세계시민주의의 상상’에 기반을 둔 약탈 문화재 반환 논리를 모색하는 데에는 여전히 영토국가의 국민만이 정의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기존의 베스트팔렌적인 상식을 이겨내는 것에 대한 이론적·현실적 차원의 어려움이 있었다. 나아가, 약탈 문화재의 원산국으로의 반환을 목표로 하는 집단(혹은 문화민족주의에 입각한 진영)에게 ‘세계시민주의의 상상’을 요청하는 것은 민족감정에 역행되는 또 하나의 문화적 무시 기제로 기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민주적 공론장

44) 정재요, 앞의 논문, 2022, p.170.

45) 김원식, 앞의 논문, 2010, p.132; 김원식, 앞의 논문, 2011, p.23.

46) 박진, 앞의 논문, 2011, p.99. 아이리스 매리언 영(Iris Marion Young)의 다음과 같은 언급도 유사한 맥락의 비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프레이저가 제시하는 정치적 목표와 원칙이 담긴 세계는 기이하게도 행동에 대해서는 텅 비어 있다. 프레이저는 문화와 정체성에 대해 ‘긍정적’ 접근보다 ‘해체주의적’ 접근을 요청하고 있다. 그런데 나로서는 이것이 현장의 활동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와닿지 않는다.” 낸시 프레이저 외 지음, 앞의 책, p.168.

을 통한 문화민주주의의 구상'에 기반을 둔 약탈 문화재 반환 논리의 모색에서도 민주적 정당성 확보에 관한 대화적(dialogical) 측면을 반영한 초국적 공론장 마련의 어려움이나, 실질적 유효성 확보에 관한 제도적(institutional) 측면을 반영한 공론의 정치적 유효성 확보의 요원함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고대로부터 전쟁 시 패전국의 재산을 몰수하거나 약탈하는 행위가 사실상 용인되어 왔고 여전히 승자의 약탈 행위를 관행적으로 용인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역사적·인식적 관성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sup>47)</sup> 프레이저의 정의론을 통해서 본 약탈 문화재 반환의 문제는 상기와 같은 이론 적용에서의 명백한 한계를 보였다.

그럼에도 약탈 문화재 반환에 있어서 프레이저의 정의론이 가져다줄 수 있는 중대한 시사점은, 문화국체주의와 문화민족주의라는 기존의 담론 자체가 문화재에 대한 '동등한 참여'를 방해하는 지구적 정의 실현의 장애물 혹은 잘못 설정된 틀(misframing)일 수 있다는 인식을 제공해준다는 점, 그리고 (비록 이론 적용상의 한계는 있지만) 세계시민주의와 문화민주주의의 틀에서 모색되는 또 하나의 지구적 정의 실현을 위한 유용한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이다.<sup>48)</sup> 약탈 문화재 반환에 관한 지구화 시대의 논리가 '개념틀 다시 짜기'(reframing)를 통해 모색될 수 있다면 프레이저의 정의론은 문화적 인간을 의미하는 '호모 쿨투랄리스'(Homo Culturalis)의 시선에서 약탈 문화재 반환 이슈를 사유하는데 유용성을 주는 이론, 다시 말하면 문화적 인간이 펼쳐내는 세계시민 민주주의(cosmopolitan democracy)를 기획하는데 유용한 정치철학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본고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

## 참고문헌

- 구진영·최은봉, “국가 주권과 문화재 반환의 절차적 정당성: 메리만 관점의 비판적 접근”, 『담론201』, 제24권 1호, 한국사회역사학회, 2021.
- 권혜령, “인권개념의 ‘세대’적 접근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학연구』, 제56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 김경민, “이라크 전쟁을 통해 본 미군의 전시(戰時) 문화재 보호의 한계와 제국주의”, 『군사』, 제108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8.
- 김경민, 『그들은 왜 문화재를 돌려주지 않는가』, 서울: 을유문화사, 2019.

47) 김경민, “이라크 전쟁을 통해 본 미군의 전시(戰時) 문화재 보호의 한계와 제국주의”, 『군사』, 제108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8, pp.88-89.

48) 정재요, 앞의 논문, 2022, p.189.

- 김민동, “이탈리아에서의 불법 문화재 반환소송”, 『법학연구』, 제22집 제3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 김원식, “비판이론과 정의(正義): 다차원적 정의의 모색”, 『법철학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법철학회, 2011.
- 김원식, “지구화 시대의 정의(正義): 낸시 프레이저의 정의론 검토”, 『철학연구』, 제28집, 중앙대학교 철학연구소, 2010.
- 낸시 프레이저 외 지음, 문현아·박건·이현재 옮김, 『불평등과 모욕을 넘어』, 서울: 그린비, 2016.
- 낸시 프레이저 지음, 김원식 옮김, 『지구화 시대의 정의』, 서울: 그린비, 2010.
- 낸시 프레이저·악셀 호네트 지음, 김원식·문성훈 옮김, 『분배냐, 인정이나?』, 고양: 사월의책, 2014.
- 노문자, “과거사 극복을 위한 독일도서관의 도서관환 활동에 관한 연구: 유대인 장서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1권 제2호,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10.
- 류병운, “약탈 문화재에 관한 국제분쟁 연구: 한국 문화재 반환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제20권 제1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 박건, “낸시 프레이저: 재분배, 인정, 그리고 대표의 3차원 정의와 페미니즘 운동”, 『여/성이론』, 24호,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11.
- 박윤옥, “박물관에서의 문화민주화에 대한 고찰: 문화민주주의로의 전이”, 『박물관학보』, 제40권, 한국박물관학회, 2021.
- 백미연, “글로벌 시대 정의의 범위: 프레이저(Nancy Fraser)의 ‘대표’(representation) 개념을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제19집 2호, 21세기정치학회, 2009.
- 서순복,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의 정책적 함의”, 『한국지방자치연구』, 제8권 제3호, 대한지방자치학회, 2007.
- 송호영, “해외 소재 불법 문화재의 환수를 위한 법정정책적 연구”, 『문화재』, 제48권 4호, 국립문화재연구원, 2015.
- 위르겐 하버마스 지음, 한승완 옮김, 『공론장의 구조변동』, 파주: 나남, 2001.
- 이문수, “정의에 대한 새로운 인식: Honneth와 Fraser의 인정이론을 통해 본 현대 사회에서의 정의”,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9권 제3호, 한국거버넌스학회, 2012.
- 이보아, “문화재의 원산국으로의 반환에 대한 고찰”, 『비교문화연구』, 제5호,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1999.
- 이주영, “발전권, 평화권, 환경권 개념의 발전과 ‘연대권’ 논의의 함의”, 『다문화사회연구』, 제10권 2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17.
- 정규영, “이집트 문화재의 반환 가능성에 관한 연구”, 『지중해지역연구』, 제9권 제1호, 부산외국어대학교 지중해지역원, 2007.
- 정재요, “프레이저의 정의론을 통해서 본 약탈 문화재 반환의 문제(I): 3차원적 정의론의 검토와 적용”, 『대한정치학회보』, 제30집 4호, 대한정치학회, 2022.
- 조맹기, “하버마스(Juergen Habermas)의 공론장 형성과 그 변동: 공중의 생활세계를 중심으로”, 『한국소통학회』, 제8호, 한국소통학회, 2007.
- 최종렬, “낸시 프레이저의 정의론과 다문화주의: 동등한 참여 규범의 사용”, 『현상과 인식』, 39권 4호,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15.
- 황정미·염건웅, “차별금지법안 찬반 논쟁에 관한 연구: 낸시 프레이저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동아법학』,

- 제94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 Conway, Janet and Jakeet Singh, “Is the World Social Forum a Transnational Public Sphere?: Nancy Fraser, Critical Theory and the Containment of Radical Possibility”, *Theory, Culture & Society*, vol. 26, no. 5, 2009.
- Ferguson, James, “Global Disconnect: Abjection and the Aftermath of Modernism”, *Expectations of Modernity: Myths and Meanings of Urban Life on the Zambian Copperbel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9.
- Fraser, Nancy, “Recognition without Ethics”, *Theory, Culture & Society*, vol. 18, no. 2-3, 2001.
- Gould, Carol, *Globalizing Democracy and Human Righ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 Held, David, *Global Covenant: The Social Democratic Alternative to the Washington Consensus*, Cambridge: Polity, 2004.
- Nicholas, George and Hollowell, Julie, “Ethical Challenges to a Postcolonial Archaeology: The Legacy of Scientistic Colonialism,” Hamilakis and Duke, eds., *Archaeology and Capitalism*, New York: Routledge, 2007.
- Young, Iris Marion, “Responsibility and Global Justice: A Social Connection Model”, *Social Philosophy and Policy*, vol. 23, no. 1, 2006.
- Young, Iris Marion, *Inclusion and Democrac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 <https://en.unesco.org/protecting-heritage/convention-and-protocols/1954-convention> (검색일: 2023.10.01.)

【 Abstract 】

A Problem on Returning Looted Cultural Assets Through Nancy Fraser's  
Theory of Justice(Ⅱ): Search for alternative logic through  
the subject and method of justice

Jung, Jae Yo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an alternative logic in the era of globalization regarding the return of looted cultural assets through reframing rather than the existing discourse on the return of looted cultural assets called cultural internationalism and cultural nationalism. To this end, this paper sets the political dimension of justice proposed by American political philosopher Nancy Fraser, that is, the theory of the subject and method of justice, as the analytical framework for the study. In this text, I examine the 'all-subjected principle' proposed by Fraser as the subject definition of justice at the level of global citizenship. In addition, I seek an alternative logic for the return of looted cultural assets at the level of linking the 'democratic public sphere' proposed as a way to equally participate in dependent subjects with cultural democracy.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problem of returning looted cultural assets seen through Fraser's theory of justice had certain limitations in terms of theoretical application. Nevertheless, it provides recognition that the existing discourse of cultural internationalism and cultural nationalism itself may be an obstacle to realizing global justice, preventing equal participation in cultural properties. It also provided useful guidelines for realizing global justice sought within the framework of cosmopolitanism and cultural democracy. Accordingly, this paper argues that Fraser's theory of justice can be a useful political philosophy for planning a cosmopolitan democracy implemented by cultural humans.

**Key Words** : Looted Cultural Assets, Nancy Fraser, Subject of Justice, Method of Justice, Cosmopolitanism, Cultural Democracy

---

• 논문투고일 : 2023년 10월 29일 / 논문심사완료일 : 2023년 11월 13일 / 게재확정일 : 2023년 11월 19일